



노동3권쟁취! 지방교육재정확충! 공무원증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수신 학교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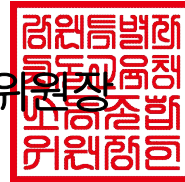
제목 [안내]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 근거
 - 가.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공문<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165(2020.12.24.)>라. 국민신문고 묻고 답하기 회신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3.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급식소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학교장은 학교 현장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요청
4.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사항
 - 가.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정상화
 - 1)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교육부 지침,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학교장과 영양교사가 협의하여 추진
 - 2) 급식과 관련 없는 교육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해당 업무 부과 금지
 - 나. 급식소 환경개선사업 정상화
 - 1) 학교급식법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직무라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 2) 조리종사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사업 등 추진 시 영양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요청
5.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 없는 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조합원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부당업무 지시 등에 따른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행정사항: 전체 교직원에게 공람 처리.

- 붙임 1.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서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공문<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165>(2020.12.24.)

3. 「국민신문고」 묻고 답하기 회신 자료 1부.
4.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 담당 관련 강교노 성명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수신자

사무총장

이민호

위원장

최승덕

협조자 지도위원 **홍성동**

시행 강교노-29(2024. 2. 16.)

접수

우 2645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195 CSE타워 3층 / 홈페이지 <http://www.gweu.kr>

전화 033-734-6344 / 전송 033-815-5510 / 이메일 gksrhdsh@naver.com /